

소비세 환급 신고에 관한 국세 당국의 대응에 대하여

소비세 제도에서는 수출 면세나 면세점의 면세 판매가 납세자의 주된 사업인 경우나 납세자가 다액의 설비투자를 실시한 경우 등에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올바르게 신고를 하는 한편, 그런 소비세 구조를 악용해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 내용으로 신고서를 제출해 소비세 환급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출되는 소비세 환급 신고서 중에는 위와 같은 부정환급 사안 외에도 각 거래 구분의 오류(과세/비과세 거래 구분 등)나 고정자산의 취득 시기 오류 등이 자주 확인됩니다.

그래서 국세 당국은 각종 정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지급을 일단 보류하고, 환급 신고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지도 차원에서 증거 서류(환급 신고의 주된 이유가 수출 면세인 경우에는 수출 허가 통지서나 인보이스 사본 등,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계약서나 청구서 사본 등, 거래 실태를 확인 가능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 신고의 이유 확인 시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각종 사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그래서 과세 매입이나 면세 거래 등의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 실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거래와 관련된 금전 수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출 등과 관련된 증빙 서류가 적절히 보관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급 보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의 수입량 및 국내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금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주)을 고려하면 밀수 증가가 시사되며, 이러한 금이 수출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출되는 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 보류 기간이 특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주) [추가적인 금 밀수 단속 강화에 대해서](#)

국세 당국은 가급적 신속히 이러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환급 세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